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겸·정정미·이미선·문형배·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출석 김용현, 검찰 공소장 속 '尹혐의' 반박...“내가 했다”

‘비상입법기구 폭지’, 검찰 주장과 달리 “尹 아닌 내가 작성” 진술 “尹, 소수병력만 계엄 투입 지시...‘의원’ 아니라 ‘요원’ 빼라고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장 속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폭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거나,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 등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놓았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폭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해당 폭지를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폭지 내 언급된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선 “기재부 내 긴급제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은 김 전 장관 공소장 속의 검찰 주장과 상반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으며,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적시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비상입법기구를 언급한 해당 폭지가 윤 대통령과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지시사항 폭지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달만 윤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핵심이 되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병력 투입 최소화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과중근 당시 특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등 군 장성들에게 직접 전화해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국회 내 계엄군 투입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처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20명 가량의 소수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려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헌재, ‘비상계엄 진술조서’ 증거 채택...국정원 기밀문서 확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과 함께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하

는 부정선거론 관련 내용도 탄핵심판에 서살피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문 대행은 이와 함께 또 선관위 보안 점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기밀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에 “국정원로부터 1월22일 회신에 왔는데 2급 기밀 문서라고 한다”며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도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또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재직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계엄 등의 국무위원 있어...지시문건도 여럿”

김용현 “최 대행 외 경찰청장·총리·행안부 장관 것도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다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했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 아니라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할 비상계엄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폭지’ 하단에 페이지 수로 추정되는 숫자 ‘8’이 적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건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공수처,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

구인·현장조사변번이 실패...“검찰 조사하는 게 효율적 판단” “경찰·국방부 공조 덕분”...구속 연장후 내달 5일께 기소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비상계엄 사태” 발생 5일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관·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할 원한 병력 인원 규모와 추가 비상계엄 언급 등에 대한 다수 증거를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이런 증거를 포함한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킵스)을 통한 전자 방식은 물론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69권으로 총 3판페이지가 넘는 수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관·검사가 판단할 문제

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전날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됐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국수본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수본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고, 체포영장 집행 때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서 법 집행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구속 전후 주요 일지	
1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3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재청구
6일	서부지법, 체포영장 재발부
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서 10시간 40분 피의자 신문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15일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직부심사청구
16일	법원, 윤 대통령 체포직부심사 청구 기각, 체포상태 유지
17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8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4시간 50분 만에 종료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압수
-22일	윤 대통령, 구속 후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 및 공수처, 강제구인·대면조사 등 조사 실패
2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로 송부(이첩)
24일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진행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 2월 4~6일로 예상)
25일	전후로 검찰,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전망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조본 체제도 계속 유지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지기원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연합뉴스

▶1면 ‘실패한 계엄...’서 계속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는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얏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없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